

# 한국젠더법학회 학회지 편집 및 간행 규정

제정 2007년 1월 13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2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30일

개정 2020년 7월 31일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젠더법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젠더법학(Korean Journal of Gender and Law, 이하 '젠더법학'이라 한다)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한 전문 논문집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젠더법학을 편집·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및 투고일)

- ① 젠더법학은 연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행일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 ②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간행할 수 있다.

## 제2장 편집위원회

###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한국젠더법학회에서는 젠더법학의 편집·간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편집위원 중 위촉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간사를 둔다.
- ③ 편집위원회는 젠더법학의 학문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언과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젠더법학 원고 접수
  2. 투고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 심사
  3. 논문 등의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의 개정
  4. 기타 젠더법학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
- ⑤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젠더법학의 편집 및 논문 등의 심사, 그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그 업무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제4조(편집위원)

- 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은 세부전공별, 근무지별, 연령별 대표성과 학문적 식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위촉되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의 궐위 시에는 편집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촉한다.

### 제3장 투고 논문 등의 작성 원칙 및 심사 절차

#### 제5조(원고의 내용)

- ① 젠더법학에 투고할 수 있는 글(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은 제 학문 분야별 여성 관련 문제 및 현안, 여성주의 및 여성학 연구 등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연구논문
  - 2. 판례평석
  - 3. 서평
  - 4. 번역
  - 5. 강연, 논단, 연구활동, 학술정보, 대담자료 등 기타 연구물
- ② 젠더법학에 투고하는 논문 등은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6조(투고 자격)

- ①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2. 변호사 자격 소지자(판사, 검사 포함)
  - 3.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개정 2020. 7. 31.>
  - 4. 기타 편집위원회가 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 ②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기고하려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편집위원 1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원고접수)

- ①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 ② 원고는 한국젠더법학회 JAMS 홈페이지(<https://genderlawkr.jams.or.kr>)로 투고한다. 단, 제5조제1항제1호의 원고를 제외하고, 한국젠더법학회 이메일([genderlawkr@hanmail.net](mailto:genderlawkr@hanmail.net))로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 ③ 원고를 투고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고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젠더법학회 JAMS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에는 원고투고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 30.>
- ④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저작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이름을 기재하며, 복수의 저자라도 동등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면 원고 본문의 각주에 표시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원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제가 젠더법학의 발간취지 및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
2. 원고가 타인의 저작물 등을 표절한 의혹이 있는 경우
3. 원고가 파일형태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원고가 간행 시기에 임박하여 제출된 경우. 단, 다음호 젠더법학의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한다.

#### 제8조(원고심사의 절차 및 기준)

- ①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가 젠더법학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렵거나, 젠더법학의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② 접수된 원고는 제목을 수합하고 투고자를 익명화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하고, 각 원고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심사를 의뢰함에 있어 원고 투고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원고 투고자에게 비밀로 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위해 <젠더법학 심사규정>을 둔다.
-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하여 <젠더법학 투고규정>을 둔다.

#### 제9조(심사위원 선정)

- ① 편집위원회는 전공, 학위논문, 연구주제, 심사자의 학문적 관심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원고에 가장 적합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젠더법학회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에 합당한 인물들의 연구역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평가)

- ① 심사위원은 상호간에 합의하지 않으며 해당 원고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
- ③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젠더법학 심사규정> 및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평가표에 '게재 가(경미한 사항 보완 포함)',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 중 하나로 평가등급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함께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게재 불가나 수정 제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외국어 논문 게재 및 심사면제 등)

- ① 삭제 <개정 2020. 1. 30.>
- ② 투고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원문

과 번역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0. 1. 30.>

③ 삭제 <개정 2020. 1. 30.>

④ 삭제 <개정 2020. 1. 30.>

⑤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원고는 심사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위원회가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30.>

#### **제12조(간행사항)**

① 간행의 모든 과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논문 간행 시 교정 작업은 원고 집필자의 책임으로 한다. 논문 간행 시에 원고 집필자는 자신의 논문 간행과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작업 및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논문은 동일 집필자가 동일 호에 한편만 게재할 수 있다.

#### **제13조(저작권 등)**

① 한국젠더법학회는 젠더법학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젠더법학의 편자는 한국젠더법학회 명의로 한다.

② 젠더법학에 수록된 개별 논문 등의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개별 논문의 집필자에게 있다.

③ 투고자는 제7조에 따라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등의 저작권 일체는 젠더법학에 논문 등의 게재가 판정된 때부터 한국젠더법학회에 귀속된다. 단, 한국젠더법학회 JAMS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를 투고하면서 저작권양도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0. 1. 30.>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31.>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젠더법학」 제 권 제 호 논문투고신청서

논 문	국문제목	
	외국어 제목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소속과 직위	소 속	
	영문소속	
	직 위	
	영문직위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b>연구윤리 확인서</b>		
저자(들)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1. 투고논문이 창의적이고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2. 저자는 투고논문 작성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고,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해서 투고하지 않았으며 투고할 계획이 없음.		

년 월 일

논문투고자: \_\_\_\_\_ (인)

### 저작권양도동의서

<b>제목</b>				
<p>한국젠더법학회가 발행하는 「젠더법학」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을 한국젠더법학회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논문 등은 창의적이며 다른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li> <li>2. 저자는 본 논문 등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최종 논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li> <li>3. 본 논문 등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4. 게재가 결정된 최종 논문 등의 저작권은 한국젠더법학회로 양도되며, 한국젠더법학회가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동의합니다.</li> <li>5. 표절 및 연구윤리위반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li> </ol>				
<b>저자 구분</b>	<b>성 명 (서명)</b>	<b>소속</b>	<b>이메일</b>	<b>전화번호</b>
주 저자	(서명)			
공동 저자	(서명)			
교신 저자	(서명)			
<p><b>년      월      일</b></p> <p style="text-align: right;"><b>(교신)저자 _____ (인)</b></p> <p style="text-align: right;"><b>한국젠더법학회 귀중</b></p>				